

의안번호	2215526
의 퇴 인	박수현의원
회 답 일	2026.5.22.
추계번호	25D71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3항 신설(이장)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제5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7조제3항 신설(이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제5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장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장에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현황 및 권역별 인구밀집도,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현황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근처의 국립묘지로 안장하려는 수요는 큰 반면, 반대의 경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 및 대도시 근처의 국립묘지를 확충하는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국립묘지 안장 수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표 1]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 현황

(단위: 기, %)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최근 3년 평균 안장자	
현충원	서울	108,230	(42.0)	91,724	(45.9)	16,506	(28.5)	3,564	(59.0)
	대전	149,340	(58.0)	108,067	(54.1)	41,469	(71.5)	2,477	(41.0)
	소계	257,570	(1000)	199,791	(1000)	57,975	(1000)	6,041	(1000)
호국원	영천	78,825	(25.1)	56,655	(30.1)	22,579	(17.9)	1,982	(19.5)
	임실	56,912	(18.1)	37,043	(19.7)	20,329	(16.1)	1,524	(15.0)
	이천	100,002	(31.8)	54,690	(29.0)	45,312	(35.8)	1,562	(15.4)
	산청	20,639	(6.6)	12,019	(6.4)	8,620	(6.8)	822	(8.1)
	괴산	47,634	(15.2)	24,413	(13.0)	23,221	(18.4)	3,285	(32.3)
	제주	10,000	(3.2)	3,570	(1.9)	6,430	(5.1)	991	(9.7)
	소계	314,012	(1000)	188,390	(1000)	126,491	(1000)	10,166	(1000)
민주 묘지	4·19	1,133	(35.2)	569	(33.7)	488	(33.5)	24	(41.4)
	3·15	122	(3.8)	59	(3.5)	63	(4.3)	2	(3.4)
	5·18	1,966	(61.0)	1,060	(62.8)	906	(62.2)	32	(55.2)
	소계	3,221	(1000)	1,688	(1000)	1,457	(1000)	58	(1000)
신암선열		52	(1000)	52	(1000)	—	(1000)	—	—
합계		574,885	—	389,921	—	185,923	—	—	—

자료: 국가보훈부

[표 2]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합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총계		333,739	177,177	152,710	3,852
수도권 강원권	서울특별시	55,240	26,920	27,698	622
	경기도	83,966	45,643	37,742	581
	인천광역시	17,667	7,902	9,685	80
	강원도	16,773	10,089	6,638	46
	소계	173,646	90,554	81,763	1,329
	비율(%)	52.0	51.1	53.5	34.5
대전· 충청권	대전광역시	10,105	6,233	3,831	41
	충청남도	14,637	7,804	6,789	44
	충청북도	10,454	5,810	4,610	34
	세종특별자치시	3,088	2,161	906	21
	소계	38,284	22,008	16,136	140
	비율(%)	(11.5)	(12.4)	(10.6)	(3.6)
대구·부산 경상권	대구광역시	14,203	8,808	5,354	41
	경상북도	17,796	10,217	7,546	33
	부산광역시	22,564	11,124	11,378	62
	경상남도	21,488	11,562	9,862	64
	울산광역시	4,867	2,750	2,101	16
	소계	80,918	44,461	36,241	216
	비율(%)	(24.2)	(25.1)	(23.7)	(5.6)
광주· 전라권	광주광역시	9,797	5,076	3,282	1,439
	전라남도	13,274	6,961	5,733	580
	전라북도	11,975	5,857	5,993	125
	소계	35,046	17,894	15,008	2,144
	비율(%)	(10.5)	(10.1)	(9.8)	(55.7)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3,874	1,888	1,972	14
	소계	3,874	1,888	1,972	14
	비율(%)	(1.2)	(1.1)	(1.3)	(0.4)
기타 (해외거주, 주소불명 등)		1,971	372	1,590	9
비율(%)		(0.6)	(0.2)	(1.0)	(0.0)
합계		333,739	177,177	152,710	3,852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